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03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김태년 · 임오경 · 문정복
안태준 · 이재강 · 이학영
최민희 · 김준혁 · 김기표
허종식 · 이광희 · 양부남
서영석 · 윤종균 · 김영환
정태호 · 손명수 · 김성희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복지사무 및 그 밖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속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

또한,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 경기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위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1천분의 747”을 “1천분의 597”으로, “1천분의 253”을 “1천분의 40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가가치세 세액에 관한 특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매년 1천분의 50씩 각각 가감하여, 2029년에는 해당 비율을 1천분의 597 대 1천분의 403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 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 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 세를 더한 세액의 <u>1천분의 747</u> 을 부가가치세로, <u>1천분의 253</u> 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 ----- ----- ----- ----- ----- <u>1천분의 597</u> ----- <u>1천분의 403</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